

<부록 10> 우리나라 교육개혁 기구의 특징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징	비고
장기종합교육계획 심의회 (박정희 정부)	국무총리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3652호, 1968. 11. 30) (폐지 : 대통령령 제 5720호, 1971.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1969~1970 - 위원장 : 국무총리 - 1972년을 시행 연도로 하여 1986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15년간의 장기 계획(3차에 걸친 5개년 계획) - 교육내용별 교육계획에서는 과학기술교육에 우선 순위 를 둠 <p>*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종합교육계획에 필요한 교육인구·인력수급·교육 재정규모등의 분석 및 추정. 2. 교육제도·교육과정·교원수급·교육재정·교육시설등의 개선 또는 확보에 관한 계획. 3. 보통교육·고등교육·과학기술교육·사회교육등의 분야 별 교육계획. 4. 기타 장기종합교육계획에 필요한 사항. <p>*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의무교육분과위원회· 중등교육분과위원회 및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문 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다른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교육정책심의회 (박정희 정부)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5717호, 1971. 7. 22) (폐지 : 대통령령 제 10470호, 1981. 9. 18)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정	비고
교육개혁심의회 (전두환 정부)	대통령	교육개혁심의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1657호, 1985. 3. 7) (폐지 : 대통령령 제 12448호, 1988.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1985. 3~1987. 12 - 10대 교육개혁 : 학제의 개편, 입시제도의 개혁, 학교시설의 현대화, 우수 교원의 확보,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과학 두뇌의 개발, 대학교육의 우수성 추구,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교육행정의 자율화, 교육투자의 획기적 확대 - 과학 두뇌의 개발 : 과학 영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과 기구를 확충하도록 함 <p>*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수렴 2.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3. 교육개혁을 위한 개선책의 연구·제안 및 심의 4. 국가교육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p>*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분야별로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제도 분과위원회 2. 초·중등 교육분과위원회 3. 고등교육 분과위원회 4. 교육발전 분과위원회 	
중앙교육협의회	문교부	중앙교육협의회규정	*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전두환 정부)		(제정 : 대통령령 제 11506호, 1984. 9. 17)	<p>음 사항을 연구·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단기의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2.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의 개선 4. 기타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p>*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회의에 앞서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지도분과위원회 2. 국사교육분과위원회 3. 국민정신교육분과위원회 4. 교육정책개발분과위원회 5. 보통교육분과위원회 6. 대학교육분과위원회 7. 교직분과위원회 8. 사회직업교육분과위원회 9. 교육시설분과위원회 <p>- 중앙교육협의회의 명칭을 중앙교육심의회로 변경</p> <p>* 제2조 (기능) 중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 <개정 1991·2·1></p>	
중앙교육심의회 (노태우 정부)	문교부/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규정 (전부개정 : 대통령령 제12448호, 1988. 5. 9)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교육정책 심의회 (김대중 정부)	교육부/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정책 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15871호, 1998. 8. 26) (폐지 : 대통령령 제 17295호, 2001. 7. 7)	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장·단기의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운영분과위원회 2. 장학편수분과위원회 3. 고등교육분과위원회 4. 지방교육지원분과위원회 5.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6. 교직분과위원회 7. 평생교육분과위원회 - 중앙교육심의회의 명칭을 교육정책심의회로 변경 * 제2조 (기능) 교육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 <개정 1991.2.1, 1998.8.26, 200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장·단기의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교육정책자문회의 (노태우 정부)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2563호, 1988. 12. 27)	<p>4. 기타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p> <p>*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7.23, 1998.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운영분과위원회 2. 교육재정분과위원회 3. 교육과정·장학분과위원회 4. 지방교육행정·교원정책분과위원회 5.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회 6. 대학교육분과위원회 7. 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 <p>- 활동기간 : 1989. 2 ~ 1993. 12</p> <p>- 중앙교육심의회와는 별도로 운영</p> <p>- 주요 교육개혁 방안 :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방안, 고교평준화 개선 방안,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초·중등교원 종합대책, 직업기술교육 개선 방안, 대학교육의 개선 방안, 고등학교 후 교육의 다양화, 사회교육 진흥 방안, 의무교육 발전 방안, 민족동질성 회복 교육 대책, 교직 사회 발전 방안,</p> <p>* 제2조 (기능) 교육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교육 개 혁 추 진 위 원 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3595호, 1992. 2. 17) (폐지 : 대통령령 제 13955호, 1993. 8. 10)	1.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조 (기능)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정책의 실천방향 2.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부처간 지원·협력방안	
교육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	대통령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4746호, 1995. 8. 9) (폐지 :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교육정책의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2.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개혁의 추진 및 이에 관한 홍보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관한 건전한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육개혁위원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3955호, 1993. 8. 10)	- 활동기간 : 1994. 2 ~ 1998. 2 -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추진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 5. 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공급자 중심 교육→학습자 중심 교육, 획일적 교육→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교육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 -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 2. 9) :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 8. 20) :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원 정책, 사학 정책 혁신, 교육정보화, 사회교육체계 확립 -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 6. 2)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 체제 개선,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 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사교육비 경감 방안 <p>*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6·4·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정책 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3.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새 교육 공동체 위 원 회 (김대중 정부)	대통령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제 15815호, 1998. 6. 24)	4. 교육개혁의 현장정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 부칙 ③(유효기간) 이 영은 1998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 (기능)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인적자원정책 위 원 회 (김대중 정부)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 (전부개정 : 대통령령 제16977호, 2000. 9. 30) (타법폐지 : 대통령령 제18001호, 2003. 6. 23)	1. 새로운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사항 2.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된 홍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개혁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2조 (기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 혁신위원회	대통령	교육 혁신위원회규정	1. 교육·인적자원개발의 추진전략 및 관련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제1기 :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 직업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노무현 정부)		(제정 : 대통령령 제 18001호, 2003. 6. 23) (폐지 : 대통령령 제 20719호, 2008. 2. 29)	<p>교육 혁신방안,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 대학 시 간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학교체제 모색(사 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 수립, 방과 후 학교 발전 방안 모색,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 을 위한 교교체제 모색,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정책 개선(능력 중심의 교원 승진·임용제도 마련, 전문 성과 사명감을 지닌 우수교원 양성체제 구축,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체제 개선), 자율적인 학교혁신 추진의 지원과 확산(자율적 학교 혁신 추진 지원,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교수-학습을 지원하 는 교육행정체제 구축), 저출산·고령화·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구상(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제개편안 수립, 한국교육 2030의 의제 개발) * 제2조 (기능)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교육·인적자원정책의 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체제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의 평가 	

교육개혁 기구	소속	근거 법령	특 정	비고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